

##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7. 4. 22.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7. 4. 22.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

- 제53회 부천시위원회(임시회) 총무위원회 제5차회의(97.5.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(제안설명자 : 기획담당관 유진생)

- 1981년 도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 행정 법규상담은 민원실의 행정종합정보센터 내의 법률상담창구, 시민읍부즈만에 의한 상담, 시고문변호사에 의한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천시법령등질의용답지침에 의하여 법무계에서도 평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로서 조례로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### 4. 토론요지

-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###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제251호
의결년월일	97. 5. 7. (제53회)

제출년월일 : 1997. 4. 22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## 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- 1981년 도표준안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현재 행정법규 상담은 민원실의 행정종합정보센터 내의 법률상담창구, 시민읍부즈만에 의한 상담, 시고문변호사에 의한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천시법령등질의응답지침에 의하여 법무계에서도 평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로서 조례로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

부천시조례 제 호

### 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